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64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최기상・안도걸・김정호

박상혁 • 허종식 • 이수진

이연희 • 김우영 • 김동아

백승아 · 임광현 · 박은정

정준호 • 부승찬 • 정태호

김한규 • 진성준 • 임미애

박희승 · 정성호 의원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원칙적으로 19세까지 머무를 수 있고 초·중·고·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해서만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한데,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약 90%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임.

이에 비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기간은 원칙적으로 18세까지이지만 해당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 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을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닌 친족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여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과 같은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자립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보호자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4. 사후관리체계 구축 운영
-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일부를 제12조제 3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퇴소한 사람은 제외한다.
- 1.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 2. 제17조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9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안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①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 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3.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 -----. 다만, 피해자가 입소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특별지원 보호시설 입 소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 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 해자의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 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 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4. 사후관리체계 구축 · 운영
-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 각 호의 조치 중 일부를 제 1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 원 공동생활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 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퇴소한 사람은 제외한다.
- 1.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 2. 제17조에 따라 보호시설에서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사람 외에 19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

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 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자립지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람

④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